

【일반회계】

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(택지개발사업)

학교용지 확보 등을 위하여 100세대 규모이상 단독주택용지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 및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(3%)을 구청장에게 지급

예산(안) 총괄 (단위 : 천원)

2013결산	2014예산 (A)	2015예산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685,931	842,485	659,848	△182,637	△21.7%

사업설명 (단위 : 천원)

사업목적

- 학교용지 확보 등을 위하여 100세대 규모이상 단독주택용지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 및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(3%)을 구청장에게 지급

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
 -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
- 부과대상 : 100세대 규모 이상의 단독주택용지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개발사업시행자
- 부과기준 : 단독주택용지 - 분양가의 14/1000, 공동주택 - 분양가의 8/1000
- 집행방법 : 자치구의 징수실적에 의거 징수교부금(징수금 3%) 지급

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15.1~2015.12
- 사업내용 :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의 3%를 자치구청장에게 교부
- '15년도 소요예산(안) : 659,579천원

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

○ 추진방향

- 건설하고 안정적인 세입확보
- 자치구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의욕 독려

○ 추진일정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계획	추진세부내용
계		659,848	
자치구 세입계좌 파악	2015.2		
학교용지부담금 입금조치	2015.3	653,655	자치구 입금조치
기간제근로자 등 보수	2015.1~12	6,193	보수지급

집행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최근 3년간 이·전용, 이용·불용 실적

연도	당초예산 (A)	전년이월 (B)	이·전용 (C)	예산현액 (A+B+C)	집행	차년이월 (명사·사고)	불용
2012	819			819	819		
2013	685			685	685		
2014	842			842	842		

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

- 해당없음

실·국	부서명	담당자			
주택정책실	공동주택과	공동주택운영팀장	신동권 (2133-7140)	주무관	장윤석 (2133-7141)